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9 호 2023. 3. 2.(목)

규	칙
○ 울신	· · 광역시 북구 규칙 제3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	· 人
	난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44회[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1 0
○ 울신	난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4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공	고
○ 울신	·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23호[2023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대상단체 모집공고]··········· 1 6
○ 울신	난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29호[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 울신	난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30호[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2 6
○ 울신	난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31호[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1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 선급한 대통은 자전에 합의하여 가지가 마합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라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 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 정희

2023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제1호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רוואודו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 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산계산기

별표 7의3 가목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되는 다을 작동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2조, 제14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서	사 서	1 · 2급 정사서	1·2급장버 준버	1·2급 장서 준서
속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u>간호조무</u>	간호조무			<u>간호조무사</u>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u>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u>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u>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u>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 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u>자가용조종사</u>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사(항공) <u>산업기사(항공)</u>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u>공간정보</u>)	기술사(지적, <u>측량 및 지형 공</u> <u>간정보</u>) 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 공간</u> <u>정보</u>) 산업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u> <u>공간정보</u>)	<u>간정보</u>)
의료 기술	의료기술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 생 사 역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 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 중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제7조(응시연령)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	
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u>	<u>1</u> 8세 이상이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u>어야</u>
<u>1. 7급 이상: 20세 이상</u>	<삭 제>
<u>2. 8급 이하: 18세 이상</u>	<삭 제>

공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제12조, 제14조 관련)

	小子.	중 구문표(>	제12조, 제1	.4조 선언)
직 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스템응용, 정보 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 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스템응용, 정보 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 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	기술사(컴퓨터시 스템응용, 정보통 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 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보 안) 산업기사(전자계 산기제어, 정보통 신, 사무자동화, 정 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1 · 2급 정사서		1·2급장서 준서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 2·3급
수의		수의사	수의사	
의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 약사	약사, 한의사, 한 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신설>			
보건 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 업기계설비, 조 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기술사(기계, 산업 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 선) 산업기사(컴퓨터 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 급 기관사1급 내지 6 급
		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사(조선, 항로 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 지) 산업기사(조선, 항 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 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 업기계설비, 조 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 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 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 급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제12조, 제14조 관련)

$\overline{}$				
작 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u> </u>		<삭제>		
사서	사 서	1 · 2급 정사서	1 · 2금 장서	1·2급장써, 준서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 2·3급
수의		수의사	수의사	22 7 7 2 2 3
		의사, 한의사	1 -1: 1	
' '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 약사	약사, 한의사, 한 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u>간호</u> 조무	간호조무			<u>간호조무사</u>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 수산	일반선박	업기계설비, 조 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 터응용가공,조 선)	기관사1급 내지
		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	기사(조선, 항로 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6급 기술사(기계, 산업
		선) 기사(일반기계)	선) 기사(일반기계) <u>산업기사(컴퓨</u> <u>터응용가공)</u>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 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현	행						개	정 안	
직 렬	<i>겨</i> 직류	 웨급 루	5급이상	6 · 7급	8 · 9급	8	작 렬	겨 직류]급 !	5급이상	6 · 7급	8 · 9급
항공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자가용조 종사		항공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고통 관제사, 항공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u>자가용조</u> 종사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 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 리사, 자가용조 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 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 조종사
	정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 공공장정비사,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	기술사(항공기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 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정	时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 공공장정비사,	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u>산업기사(항공)</u> 항공정비사, 항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시설	지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시설	지	적	<u>량 및 지형 공</u> <u>간정보</u>) 기사(지적, <u>측량</u>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 보) 산업기사(지적, 지적, 보)	기술사(지적, 측 량 및 지형 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 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 도제작, 도화, 항 공사진, 지적)
의료 기술			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사선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의료 기술	의료	기술	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사선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임상병리사, 방 사선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위생	위 사	생 역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	위 사	생 역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환경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 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	조	리			환경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 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 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u>양식, 목어)</u> 간호조무사
운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 (대형) 제1종운전면허 (보통) 제2종운전면허 (보통)		운전	순	전			제1종운전면허 (대형) 제1종운전면허 (보통) 제2종운전면허 (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 건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전산	<u>전산</u>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압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이하생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2	식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신설>						
		(이 하 생 략)						

개 아 정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 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보안, 빌데이터분석산갑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무자동화, 정보처리,정보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계산기	정보처 , 정보 신, 사 L보안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전산 전산	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 사자격 증 가 산비율 적용 : 멀티미 디어콘 텐 츠 제작전 문가
	(이 하 생 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2022.11.15.시행)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요건(자격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을 위한 자격 증을 정비(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3)
- 각종 응시요건(자격증) 관련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44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0. (14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관보

3. 공고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3건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가. 방법 및 서식 : 우편 또는 팩스(052-241-7569), 서식 【붙임2 참조】

나. 제출기간 : 2023. 3. 10.(금)까지

다. 우편주소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민원지적과

5.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역신청 도시개발사업자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직권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이내 주민의견
수렴공고14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 심의결과 · 내용 및 절차
-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283)
-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 조서 1부.
 -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 조서

○ 입체도로명 부여(안)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 조서																
연번	유형	구분	도로구간	도로폭	도로폭 길	길이	기초번호		기초간격	도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πδ	十正	시작지점	끝지점	(m)	(m)	시작	끝	(m)	위계	에미포포공	T-01/177	0117				
1	고가			진장동	17	606.6	1	61	20	로	효문	도로명주소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신규				
	도로	하행	884-2	642-1	642-1	642-1	642-1	-2 642-1	642-1		606.6	1	61		고가도로	"고가도로"를 나타 내는 명칭부여	부여
2		상행	연암동 861-2	연암동 1140-3	17	758.1	2	76	20	로	상방 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 시행 상방 령 제8조에 따라	령 제8조에 따라 신	신규			
2	지하	하행	연암동 968-1	연암동 1140-3	17	597.9	17	75	20	エ		"지하도로"를 나타 내는 명칭부여	부여				
3	도로	상행	화봉동	송정동	17	610.9	2	62	20	로	화봉	도로명주소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신규				
3		하행 1143-1 513-2 17 626.0		1	63	20	工	지하도로	"지하도로"를 나타 내는 명칭부여	부여							

○위치도(안)

위치	효문고가교
예비도로명	효문고가도로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가도로"를 나타내는 명칭부여
	변례 도로명부여대상 시군구 경계 지상도로 도로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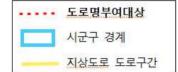


위치	화봉지하차도
예비도로명	화봉지하도로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부여





범례



붙임 2 의견제출서(서식)

도로명 부여(변경) 주민의견서

의 견	성명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공 고 내 용	< 도로명 부	여(안)>
기타 다른의견 (사유)		

도로명 부여(안) 등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4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수박골1길 3	호계동 692-1	2023. 3. 2.	건축물 멸실
동해안로 1422	구유동 376	2023. 3. 2.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23호

2023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대상단체 모집공고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모을 위한 2023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사업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대상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 사 업 비 : 8,000천원 (국 4,000 시 2,000 구 2,000) ※ 1개 단체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공동구매 ※ 반드시 단체·조직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구매는 불인정
- 지원내용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공고)기간 : 2022. 2. 28.(화) ~ 3. 10.(금)
- 접수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2층)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접수 ※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신청서, 단체 회원명부 등
 - ※ 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상선정 및 사업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가능
- 우선선정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수상('18~'22),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참여 조직('17~'22), 사 회적·경제적 기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자 선정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 세부지워내용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사업 실무 담당자 인건비 지원
물류비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식재료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화물운송비 실비(2개 이상 화물 운송업체의 비교 견적서 첨부) 기준으로 지원 가능
창고임차비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교육 컨설팅비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현장점검비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 지원
기타운영비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회원사 간 회의비 등

- 추진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금교부 및 정산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후 실비기준 정산·지원
- 보조금 관리, 집행 : 신규 통장(별도계좌, 조직명의)을 통해 집행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 이상 공동구매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개별 안내 예정

	7	IE	人	항
-		J	- -	

○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농수산유통팀(052-241-806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3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신청서

공

□ 조직현황

	조 직 명	설 립 일	
	대표전화	회원사수	
조직	주 소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목적		
	활동내용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I 내표자	휴 대 폰	e-mail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실무)	휴 대 폰	e-mail	

□ 사업계획

- 조직의 공동구매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수상(*18~'22),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시업 참여 조직(*17~'22), 시회적 · 경제적 기업(협동조합 등)은 시업자 선정시 우선 선정 또는 기점 부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 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 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융자한도 금액 조정(안 제4조제1항)
 - (당초) 5천만원 이내 → (변경) 6천만원 이내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3. 관계법령

-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3조
- 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02, 팩스번호 : 052)241-77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 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를 "이자차액 보전 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제1조(목적)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u>시행</u>	
<u>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u>시행에</u>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소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상공인당 <u>5천만원</u> 이내로 한다.	<u>6천만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7조 에 따른 <u>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u> 보전"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 로 한다.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제7조(융자기한) ① 융자대상으로 통	제7조(융자기한) ①

현 행	개 정 안
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u>1회에 한하여</u> 15일까지 융자	한 차례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른</u> 기간 내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	
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u>.</u>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생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②
융자금액의 0.2퍼센트 <u>범위 내에서</u>	<u>범위에서</u>
지급할 수 있다.	

2023. 3. 2.(목요일)

공

관계법령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 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있다.

- 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이번에그 시호에 대회 이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30호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예산)공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8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9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453억원 보다 3,583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6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63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5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21%입니다.
-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 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는 작지만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태연(052-241-7115)

2023. 3. 2.(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 9. 1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2. 9. 14.폐지

2. 주요내용

- 가. 목적,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6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법정계획 등(안 제7조 ~ 제9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0조 ~ 제17조)
-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안 제18조 ~ 제25조)
-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 등(안 제26조 ~ 제32조)
-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3. 관계법령

-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8조, 제22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제65조, 제68조, 제79조
- 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72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위생과
 - 2) 전화번호: 052)241-7762, 팩스번호: 052)241-77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 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기휘기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23. 3. 2.(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

공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 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 의 이행을 추진한다.
 -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 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 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 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 3. 2.(목요일)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 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탄소중립비전
 -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 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

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워회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 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 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 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 야 한다.
-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후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 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2.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등
 - 5. 그 밖의 해당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 1. 지원센터 운영계획
 -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30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2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 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 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관계법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 ② ~ ⑦ (생 략)
-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②(생 략)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 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당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 ⑦ (생 략)
-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보

- ② ~ ④ (생 략)
- 제7조(탄소중립 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시·군·구 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2. (생 략)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 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생 략)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 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 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 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